

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·공고

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·공고합니다.

2017. 3. 21.

영 동 군 수

1. 시행일자 : 공고일로부터 즉시

2. 지정근거 :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

3. 공고내용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“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·공고하는 구역”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용도 지역의 지정)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(용도지역의 세분) 규정에 따른 “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”으로 한다.

4. 공고방법 : 영동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

5. 기타사항 :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·공고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도시건축과(☎043-740-339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